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57호)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36호)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97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266호)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542호)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854호)
- 설 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964호)

2023.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9
-----------------	---

1.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간소화 (강준현의원안)	9
2. 농어촌 등 지방 돌봄 여건 개선 대책 강구 의무 신설 등 (김원이의원안)	12
3.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근거 마련(강득구의원안)	19
4. 아동의 연령 상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추가 (김미애의원안)	25
5.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외 (송석준의원안)	36
6. 자립지원조치에 의료 추가 (윤호중의원안)	40
7. 아동보호구역에 어린이놀이기구 추가 등 (설훈의원안)	44

<참고자료>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51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요	52
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개요	53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개요	54
5. 유사 입법례	55
6. 아동안전지킴이 개요	57

I. 개요

1.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39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3. 8. 23.
- (3) 회 부 일 : 2023. 8.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아동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도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2.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0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8. 28.

(3) 회 부 일 : 2023.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방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줄어들어 해당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및 제59조제1호후단 및 각 목 신설).

3.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09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3. 8. 31.

(3) 회 부 일 : 2023.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4조제2항 및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4.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2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3. 9. 6.
- (3) 회 부 일 : 2023. 9.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에 위탁된 보호대상아동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18세인 자는 미성년자이면서 현행법상 아동이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1년간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입양만 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또한 위탁가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이에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4호).

5.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54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9. 18.

(3) 회 부 일 : 2023. 9. 21.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해당 교원은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17조제5호 단서 신설).

6.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8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3. 9. 27.
- (3) 회 부 일 : 2023.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또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보호종료아동 지원 항목에는 정서적·신체적 건강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자립을 준비하던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는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홀로서기한 청년들이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임.

이에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7. 설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9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설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3. 9. 27.

(3) 회 부 일 : 2023.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주변구역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3조제1항).

II. 검토의견

1.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간소화
(강준현의원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¹⁾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교육기관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⑦ (생략)</u>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2)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자등의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전력 조회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특히, 최근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각 아동관련기관(교육기관)의 장의 행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관한 법률」이 개정(2023. 4. 11.)되어 시행(2023. 10. 12.) 중에 있기도 함³⁾.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학교 등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8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 농어촌 등 지방 돌봄 여건 개선 대책 강구 의무 신설 등 (김원이의원안 제4조제8항 신설 등)

□ 개정안에서는 지방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방안 강구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 부여하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제59조제1호 후단 및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u><후단 신설></u> <u><신설></u>	제59조(비용 보조) ----- ----- ----- ----- -----. 1. ----- ----- ----- ----- <u>비용.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u> <u>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u>

<신 설>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신 설>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
2. ~ 8. (생 략)	다.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도시
	2. ~ 8. (현행과 같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에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⁴⁾되었음. 2023년 9월 기준 전국에 약 4,200개소가 운영 중으로 약 11만명의 아동이 이용중이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 규모는 2,289억 수준임.

< 읍면 및 동별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2023년 9월말 기준) >

구분	전체	동지역	읍면지역
○시설수	4,221개소	2,971개소	1,250개소
○아동수(정원)	120,439명	85,615명	34,824명
- 시설당 평균	28.5명	28.8명	27.9명
○아동수(현원)	108,924명	77,333명	31,591명
- 시설당 평균	25.8명	26.0명	25.3명
○종사자수	12,540명	8,775개소	3,765개소
- 시설당 평균	2.97명	2.95명	3.0명

* 주: '23.9월 사회보장정보원 등록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4,256개소 중 주소지 확인 4,221개소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4)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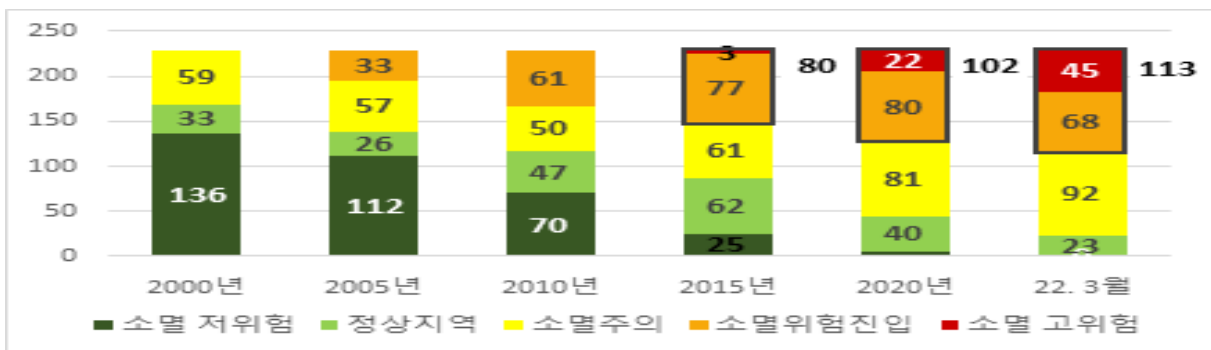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 주요 지원 사업 내용(2023년 예산 기준) >

구분	내 용
① 운영비 지원	- (기본운영비) 4,180개소 월평균 139만원(정원별·지역특성별 차등 지원) (추가운영비) 1,050개소 월 20~30만원(多센터 운영 비영리법인 소속 센터)
② 인건비 지원	센터장 4,180명 월 2,976천원, 생활복지사 5,467명 월 2,610천원
③ 환경개선비 지원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지자체·비영리법인 시설 : 30백만원, 개인시설 : 10백만원
④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저녁돌봄, 토요운영 등 특화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지원 * (특수목적형) 월 60만원, (토요운영) 월 30만원
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기초영어, 독서지도 등 아동학습 지원 교사 파견

* 자료: 보건복지부

□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49.6%)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지역 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이 감소하고, 돌봄기관이 부재한 곳으로 이주를 꺼려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바, 국가 및 지자체가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인구 감소가 뚜렷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벽지, 농어촌·준농어촌, 중소도시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 보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소멸위험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



*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이 10인 이상인 경우부터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존 10인 미만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삭제되면서, 2012년 8월 5일부터는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설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바⁵⁾, 도서·벽지 등 개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10인 미만으로 하여서는 신규설치 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

구 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인 이상	1인	2인 (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1인 (아동 50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 아울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기본운영비 기준액은 높으나, 이용 아동 현원이 3개월 동안 연속 하여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고, 예외적으로 지역돌봄협의회⁶⁾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현황 >

정원구분		법정 종사자수	월 기준액
10인이상 19인이하	동지역	2명	1,060천원
	읍면지역	2명	1,231천원
20인이상 29인이하	동지역	2명	1,384천원
	읍면지역	2명	1,580천원
30인이상	동지역	3명	1,460천원
	읍면지역	3명	1,645천원

주: 10인 미만 시설은 1,060천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5) 기존('12.8.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가능. 기존 시설(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6) 지역돌봄협의회는 지자체가 주관·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바 광역 지자체 17개 중 16개(94%), 기초지자체 226개 중 173개(77%)가 구성되어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현황 >

정원구분	법정 종사자수	월 기준액
10人以下	1명	2,976천 원
10人以上 19人以下	2명	5,586천 원
20人以上 29人以下		
30人以上	3명	8,196천 원

주: 시설장 월 2,976천원, 생활복지사 월 2,610천원 기준(4대보험료 사업자 분담금 및 퇴직 적립금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용 아동이 5인 이하로 3개월 동안 운영될 경우 보조금은 지급 중지되는바, 도서·벽지, 농어촌·준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경우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보조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돌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필요성 인정 주체의 부재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임. 실제로, 읍면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 1,250개소를 기준으로 지역돌봄협의체가 설치된 지역은 905개로 72.4%이고, 미설치된 지역은 27.6%에 해당하는 345개임.

< 기초 지자체 기준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여부 및 관할 센터 현황 >

구분	전체	설치 지역	미설치 지역
○시설수	4,221개소(100%)	3,393개소(80.4%)	828개소(19.6%)
- 동지역	2,971개소(100%)	2,488개소(83.7%)	483개소(16.3%)
- 읍면지역	1,250개소(100%)	905개소(72.4%)	345개소(27.6%)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운영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다함께돌봄센터, 다른 아동

복지시설⁷⁾이나 그 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그 외에 지방의 돌봄 여건 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지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간 여건 차이가 크지 않고, 이용 아동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며,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7)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 의견 >

부처명	의견
보건 복지부	○ 지역별 지역아동센터간 여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농어촌지역 센터의 경우 이용아동 수가 10인 미만으로 운영되어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원하도록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 * 센터별 평균 이용아동 수 : 군지역 25.5명 vs 시지역 26.4명, 구지역 25.3명 * 센터별 종사자 수 : 시·군·구 지역 모두 2.3명 * 종사자 1인당 돌봄아동 수 : 군지역 11.3명 vs 시지역 11.5명, 구지역 10.8명 ○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기획 재정부	○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서울과 지방간 차등보조율(서울 30%, 지방 50%)을 적용하는 등 지방의 돌봄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으로, 개정안과 같이 도서·벽지, 농어촌 및 준농어촌 등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법정화 하는 것은 he지역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아동복지법은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 법정화시 he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초래 우려

문 의 처

02)6788-5498

3.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근거 마련(강득구의원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등)

□ 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보호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제5호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경계선지능아동”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및 경계선지능아동</u>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절 경계선지능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44조의3(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4(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아동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 ‘경계선지능아동’을 포함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의학적으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⁸⁾에 따른 지적장애 기준인 ‘IQ 70이하’보다는 지능이 높으나 평균보다 다소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음.

정신의학적으로, 경계선 지능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가 70~84 범위인 경우로 인구의 6~7%를 차지하며,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내외의 정신장애 원인이 없더라도 좌절이나 당황 같은 심한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만, 적절한 지도로 고통을 경감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⁹⁾.

통계적으로, 지능지수(IQ)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2 표준편차 이하)보다는 지능이 높으나 -1 표준편차 미만인 사람으로, 표준정규분포표에 따르면 전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함.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9) 민성길, 김찬형, 「최신정신의학」(제7판), 일조각(2023), 207면

□ 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현행 「아동복지법」¹⁰⁾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발달장애인법」¹¹⁾의 방과 후 활동지원 및 보호자 지원과 유사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인지·학습능력이 미비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하여 생애 초기부터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및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10)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참조

11)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2~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개요> 참조

□ 첫째, 개정안에서는 정책 대상인 경계선지능아동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에 대한 것인만큼 위임에 앞서 법안심사단계에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 및 이들의 욕구 파악과 함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경계선지능아동에서 「발달장애인법」상 발달 장애인¹²⁾ 중 지적장애인만을 제외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는 지적 장애인 외에 자폐성장애인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경계선지능인 및 경계선지능아동의 법제화 방식과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독립된 지원체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2호) 및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713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교육위원회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534호)가 계류 중인바, 경계선지능 성인 및 아동을 포괄하는 별도의 지원법 체계로 일원화 할지 또는 경계선지능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법제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음.

12) 「발달장애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전문인력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도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경계선지능아동
 - *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84이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사업예산) 2023년 1,076백만원(서울 50%, 지방 70%)
 - * ('19) 989백만원 → ('20) 1,097백만원 → ('21) 1,076백만원 → ('22) 1,076백만원
-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1인당 30만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1인당 최대 50회기) 지원
 - (선별검사) 경계선지능아동 의심대상자, 종합심리검사 2년 경과 대상 아동 등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 개인별 상담을 통한 욕구 등을 토대로 인지·사회성·정서·자립(진로탐색,경제,성교육 등) 및 학업·취업지원(특화프로그램) 등
 - (지원 현황) 선별검사 106명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811명('22년)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이나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¹³⁾.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적용 대상인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서비스 욕구 파악, 전달체계 수립 등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 충분한

13) 2023. 10. 10. 기준 46개 지자체 및 교육청이 관련 조례 시행 중임.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경계선 지능아동의 성장 후 지속적인 지원, 성인 경계선지능인과의 지원체계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전체에 대한 욕구파악, 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8

4. 아동의 연령 상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추가

(김미애의원안 제3조제1호 등)

-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인 사람에서 「민법¹⁴⁾」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u>18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제3조(정의) ----- -----. 1. -----「 <u>민법</u> 」상 <u>미성년인 사람</u> -----. 2. ~ 11. (현행과 같음)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생략)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위탁가정의 <u>사례관리</u> 5. ~ 8. (생략)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례 및 사후관리</u> 5. ~ 8. (현행과 같음)

- 첫째, 아동의 연령 상향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18세인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니어서 이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14)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한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는바¹⁵⁾ 국제적 기준과 맞지 않게 될 수 있고¹⁶⁾,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의 연장¹⁷⁾이 가능하기도 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 정의를 인용하거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의를 인용하거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 >

법률	용어	규정방식	정책 내용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 아동보호조치대상 -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가능 • 아동학대 보호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높은 형량 부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높은 형량 부과 * 단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우선 적용

15) 「UN아동권리협약」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 1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의 개념을 달리 사용하는 국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정의 일치를 권고하고 있음.
- 미크로네시아 제2차 국가보고서(2019)에서 압 주(州)에서 관습에 따라 19세 소녀를 아동으로 간주하자, 협약의 정의와 불일치를 지적하고 우려 표명
 - 베트남 아동법(2016년 기준)에서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아동의 정의에 18세 미만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

17)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	용어	규정 방식	정책 내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또는 고교생 이하 학생	•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장소 제한 등
암관리법 시행령	아동 중 암환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능 •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연장 가능
입양특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있어 보호와 권익, 복지 증진
실종아동보호법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법		18세 미만인 사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 등
가정폭력방지법		18세 미만인 사람	• 가정폭력 방지 정책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만18세 미만의 사람 중 등록한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등
영화비디오법	청소년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학생 포함)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규정
근로기준법	연소자	만18세 미만인 사람	• 만18세 미만인 자는 근무시 보호자 동의 필요, 1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 불가

*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개정안은 아동의 정의에서 연령을 상향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도래 연령은 18세로 유지하고 있는데¹⁸⁾, 연령 도래로 인한 퇴소는 현행법상 아동이 아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령이 상향될 경우 퇴소 연령 또한 함께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연령 기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호의 대상일 경우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사회적·경제적 생활과 관련되거나 선거권·감사청권 등 일부 국민

18)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또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은 18세로, 주민
소환투표권 및 병역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민법」 상 성인인 19세로,
실질적 보호 기간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 등의 연령 기준은 24세로
정하고 있는 등 연령 기준은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주요 법률상 연령 기준 현황 >

연령	관련 법률
18세 미만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음(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제4호, 18세미만) -부양자녀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18세 미만) -사형·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 18세미만) -아동의 연령(아동복지법, 18세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제1호, 18세미만) -해기사 제한연령(선박직원법 제6조제1호, 18세미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18세미만)
18세	-국민연금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제6조, 18세 이상 60세 미만) -약혼나이(민법 제801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등 동의를 받아 약혼) -혼인적령(민법 제807조, 18세가 된 사람) -병역준비역 편입시기(병역법 제8조, 18세부터) -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18세) -감사원에 감사청구연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18세 이상)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¹⁹⁾) : 음주, 흡연 등 유해매체 제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출입 제한, 게임 및 영화 등 매체물 연령 제한 / 성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9세	-성년연령(민법 제4조, 19세) -병역판정검사 연령(병역법 제11조제1항, 19세 이상) -주민소환투표연령(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19세 이상)
20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시점(국적법 제12조, 만20세) -배심원의 자격(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20세 이상)
24세	-청소년의 연령(청소년기본법 제3조,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연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24세 이하)

19)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여 음주, 흡연,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보호하되, 대학생 및 만 18세 근로자들의 사회활동 장려 취지로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보호대상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 정의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및 다른 법률과 해석상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유관단체 의견 >

부처명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호대상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정의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및 타법과의 해석상 모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상 아동 정의 18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보다 아동의 연령이 상향되어 아동보다 청소년을 높은 연령대로 보는 사회통념과 배치되고 모순 발생											
	< 관련 법률별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구간 >											
	<table><tr><td>(예) 2005년 7월 1일생</td><td>2023.6.30.</td><td>2024.6.30.</td><td></td></tr><tr><td>2022.1.1. 만 17세가 되는 해 연 나이 18세(고2)</td><td>2023.1.1. 만 18세가 되는 해 연 나이 19세(고3)</td><td>2024.1.1. 만 19세가 되는 해 연 나이 20세(대학생)</td><td>2025.1.1. 만 20세가 되는 해 연 나이 21세</td></tr></table>	(예) 2005년 7월 1일생	2023.6.30.	2024.6.30.		2022.1.1. 만 17세가 되는 해 연 나이 18세(고2)	2023.1.1. 만 18세가 되는 해 연 나이 19세(고3)	2024.1.1. 만 19세가 되는 해 연 나이 20세(대학생)	2025.1.1. 만 20세가 되는 해 연 나이 21세			
	(예) 2005년 7월 1일생	2023.6.30.	2024.6.30.									
	2022.1.1. 만 17세가 되는 해 연 나이 18세(고2)	2023.1.1. 만 18세가 되는 해 연 나이 19세(고3)	2024.1.1. 만 19세가 되는 해 연 나이 20세(대학생)	2025.1.1. 만 20세가 되는 해 연 나이 21세								
<table><tr><td>①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범위 (만 18세 생일까지)</td><td></td><td></td><td></td></tr><tr><td>②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범위 → (만 19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td><td></td><td></td><td></td></tr><tr><td>③ 개정안 아동(=미성년) 범위 (만 19세 생일까지)</td><td></td><td>청소년<아동</td><td></td></tr></table>	①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범위 (만 18세 생일까지)				②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범위 → (만 19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③ 개정안 아동(=미성년) 범위 (만 19세 생일까지)		청소년<아동	
①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범위 (만 18세 생일까지)												
②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범위 → (만 19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③ 개정안 아동(=미성년) 범위 (만 19세 생일까지)		청소년<아동										
아동권리 보장원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의 보호보다 아동권리 강화 측면*과 아동 연령의 국제적 기준 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핸드폰 개통, 보험가입, 부동산계약 등에 어려움이 있음. 선거권 연령도 '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되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정의는 만18세 미만으로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일											

□ 둘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추가와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48조 및 제49조²⁰⁾에 따라 전국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인바, 2023년 6월 기준 9,05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39명의 종사자가 가정위탁사업 홍보 및 가정 발굴, 위탁 희망 가정 조사 및 대상 아동 상담, 위탁가정 부모 교육, 위탁가정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 복귀 지원, 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시·도	상호명	운영법인
서울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대구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천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시·도	상호명	운영법인
대전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울산	울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굿네이버스
경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대한사회복지회
강원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YMCA
충북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충남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전남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공생복지재단
	전라남도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순천성신원
경북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사)한국아동복지협회
경남	경상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제주상담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및 관할 아동 현황(2023.6) >

(단위: 명)

센터명	종사자	가정위탁아동	
		전체	만15세이상
소계	239	9,057	5,690
서울	17	780	511
부산	15	458	294
대구	12	264	151
인천	11	114	288
광주	10	323	206
대전	7	223	108
울산	8	249	123
경기남부	26	1,269	756
경기북부	16	535	357
강원	11	761	478
충북	12	409	254
충남(세종포함)	15	694	342
전북	16	628	385
전남	12	387	245
전남동부	9	352	218
경북	18	714	432
경남	13	671	421
제주	11	226	121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가정 사례관리 외에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례관리는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²¹⁾ 제공·연계 업무인데 비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의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아동을 가정에 안정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지속적인 위탁 및 양질의 위탁 가정 유지를 위해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사후관리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탁가정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대리양육위탁(친·외조부모 위탁), 친인척 위탁(8촌 이내 혈족 위탁)의 경우 새로운 아동의 위탁을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후관리의 대상을 일반위탁가정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업무의 추가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확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음.

<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21. 12.) >

(단위: 세대, 명)

구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합계
세대수	4,817	1,999	917	7,733
아동수	6,107	2,344	1,084	9,636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가정위탁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아동 중 15세 이상에 대해서는 자립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21)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에는 전세자금 지원, 소득공제, 상해보험, 심리치료 등이 있음.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담당²²⁾하고, 연령(18세)이 도래되어 위탁이 종료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²³⁾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어 동일 용어 사용으로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일률적으로 사후관리를 규정하게 되면 가정위탁 재참여 의사가 없는 친인척 위탁가정도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친족 이외의 위탁부모 사후관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2)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23)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유관단체,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의견 >

부처명		의견
보건복지부		현행법 제16조의2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언급하고 있어, 동일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현장 혼선 우려와 일률적으로 사후관리를 규정하면 가정위탁 재참여 의사가 없는 친인척 위탁가정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친족 이외의 위탁부모 사후관리’로 한정할 필요
아동권리 보장원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리 위탁종료의 개념이 있음.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탁종료 후의 사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의미가 모호할 수 있음
지자체 (충남도청)		종결 후 위탁아동의 사후관리는 이미 자립지원전담기관·지자체·센터 역할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49조제2항제4호는 현행 유지하되, 위탁가정의 발굴 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 역할도 중요하므로 제1호에 관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제안
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	종결아동의 사후관리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로, 개정 시 현장에서 기관간 업무혼선 발생. 사례관리 대상자들도 다중기관의 관리로 인한 혼선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 유지 필요
	부산	의안원문의 제안이유로 보았을 때 사후관리의 대상은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외)가 위탁아동 보호가 종료된 후 다른 보호아동을 위탁받기까지 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부모의 사례관리 및 위탁부모(친인척 외)의 사후관리”로 명확하게 수정 필요
	인천	사후관리는 가정위탁 종결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위탁아동이 보호 종결되는 즉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광주	원가정복귀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령도래로 보호 종결된 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주체이며,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만으로도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수가 많아 현행 유지 필요
	충북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도 중요한 사항이나 연령 도래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업무 이관되었음.
	전남	현재 가정위탁 중인 위탁가정의 사례관리만으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사후관리를 명시하는 경우 가정위탁 종료된 모든 위탁가정을 관리해야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 유지 필요
	경북	연령도래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연령도래 전 원가정 복귀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사후관리 주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제주	사례관리는 위탁아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후관리는 보호종료된 아동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 주 사후관리 기관은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현행 유지 필요

문 의 처

02)6788-5498

5.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외

(송석준의원안 제17조제5호)

- 개정안에서는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금지행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포함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하여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 조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²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금지행위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최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일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 한편,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의 원장(학교의 장)과 교원은 유아(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²⁵⁾하고 있음.

24) 강기윤의원안은 학생생활지도행위로 인한 경우를 정서적학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25)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대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내용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u>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u>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 법 체계상 「초·중등교육법」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²⁶⁾」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단서 규정 신설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의 재확인 외의 다른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을 정서적 학대행위 제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아동복지법」에 과실범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²⁷⁾ 「형법²⁸⁾」에 따라 고의가 성립하여야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강조의 의미 외 별도의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는 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② 아동학대행위로 형법상 개인적 법익 침해, ③ 아동학대행위를 수단으로 아동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27)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28)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참고로,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정 법률에서의 행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다시 다른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또다시 두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²⁹⁾.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4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 대한 면책, 교육감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도록 하였는바,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조항은 「아동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고, 특정 직군에 대한 예외를 「아동복지법」에 명시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8

29) <참고5 유사 입법례> 참조

6. 자립지원조치에 ‘의료’ 추가(윤호중의원안 제38조제1항)

-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에 ‘의료’를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u>취업</u> 등의 지원	1. ----- ----- <u>취업·의료</u> -----
1의2. ~ 5. (생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최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1,700~2,600명이 보호종료되어 2022년말 기준으로 보호종료아동은 11,403명에 이릅니다.

<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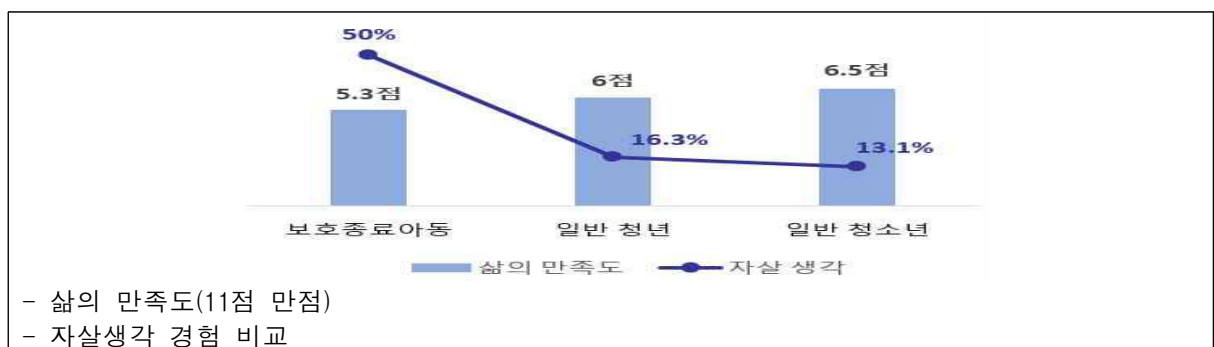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11,403명	4,327명	813명	6,263명
2022년	1,740명	717명	124명	899명
2021년	2,102명	726명	157명	1,219명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2019년	2,587명	992명	172명	1,423명
2018년	2,606명	1,065명	192명	1,349명

* 자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18년~'21년), 행복이음('22년))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치료비가 없다는 응답이 37.7%로 조사되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생각 경험 등이 높아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경험 비교³⁰⁾ >



* 자료: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현행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 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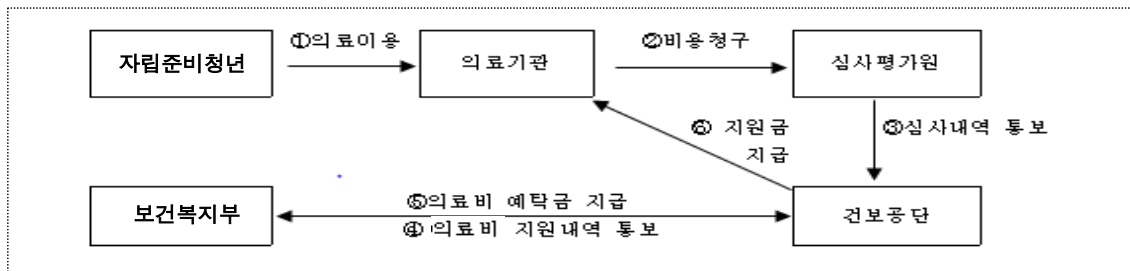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예산 사업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를 추가

30) 해당 조사는 보호종료아동의 일부만이 응답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하려는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①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②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수준 무관)
 -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11,000명 중 약 7,000명(약 65%)
 - **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수급자(약 35%)는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음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은 이와 유사한 수준(외래·입원 14% 등)으로 설정
- ('23년 예산) 1,095백만원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추진체계)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한 본인부담금 사전 경감 방식*
 - * 의료이용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므로 체감도가 높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내역 관리가 가능하여 타 의료비 지원 제도와 중복지원 문제 완화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 지원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이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보아 자립지원 조치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방식 외에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신설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겠음.

< 의료비 지원 별도 규정을 둔 입법례 >

법률	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희귀질환 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98

7. 아동보호구역에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추가 등

(설훈의원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 개정안에서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을 추가하고,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활용을 의무화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 <u>활용</u> 할 수 있다.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 ----- ----- ----- <u>활용</u> 하여 <u>야 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³¹⁾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출입문 또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에 대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함.

31)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가능 시설 >

법률명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유치원

□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서울·부산·인천 등 53개 시·군·구에 총 2,9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구,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전국에 도시공원은 18,304개소, 어린이집은 30,923개소, 초등학교는 6,163개소, 유치원은 8,56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비율도 각각 4.7%, 2.0%, 18.2%, 3.8%에 불과함.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2023. 9. 30. 기준) >

(단위: 개소, 대)

시도	시군구	시설별 (개소)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대)
		계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 (3호)	유치원 (4호)	
서울	5개	192	87	5	95	5	2,035
부산	16개	276	11	72	138	55	2,604
인천	1개	16	0	6	6	4	16
대전	1개	155	66	40	23	26	982
경기	7개	830	299	246	188	97	7,810
강원	3개	34	26	1	7	0	70
전남	15개	1,247	316	228	567	136	2,287
경남	5개	176	51	19	100	6	547
합계	53개	2,926	856	617	1,124	329	16,351

*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 취합자료(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없음)

□ 이처럼 이용 아동이 많은 핵심시설로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 어린이놀이기구³²⁾ 중 아동의 이용이 많은 학원이나 공공도서관 등 많은 시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주변 구역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참고로, 2023년 10월 현재 어린이놀이기구는 총 80,53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

법률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법」	휴게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의료법」	의료기관
「주택법」	주택단지

32)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건축법」	종교시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
「관광진흥법」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법」	하천구역, 하천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단위: 개소수, '23.9월 기준)

총계		81,011	
주택단지	42,903	학원	109
도시공원	11,689	의료기관	30
어린이집	7,945	도로휴게시설	33
학교	6,780	주상복합	272
유치원	7,505	공공도서관	43
식품접객업소	1,238	종교시설	322
놀이제공영업소	1,207	박물관	77
대규모점포	83	하천	74
아동복지시설	379	자연휴양림	119
목욕장업소	62	야영장	141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아동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설(종교 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고, 주택단지 등 일부 민간시설의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로 인한 사적 권리 침해 가능성도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적용 시설을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도 있겠음.

- 관련 부처 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 의견 >

부처명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공감, 개정안에 동의
행정안전부	○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아동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설(종교시설, 음식점 등)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임 - 개인·민간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로 인한 사적 권리 침해 우려도 존재

- 둘째, 현행 「아동복지법」 제33조³³⁾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활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량 급증과 인건비 등 재정소요가 예상되는바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33)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은 아동안전 보호인력 의무 배치의 경우 지역 및 시설의 위험도, 특성, 순찰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 의견 >

부처명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인력 소요, 업무량,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해당 지역·시설의 위험도, 특성, 경찰 순찰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 경찰은 노인인력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자치경찰사무)을 시행 중('09년~) <참고 6: 아동안전지킴이 개요 참조> - 다만, 제한된 활동시간·예산, 사업특성(노년층의 참여·봉사에 기반한 사업 등)을 고려할 때 同인력을 의무배치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음 - 지자체별 재정 여건, 환경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이 타당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자치경찰사무로 예산편성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활동비, 부대경비(피복류, 보험 등) 등 예산이 필수적으로 소요됨

문 의 처

02)6788-5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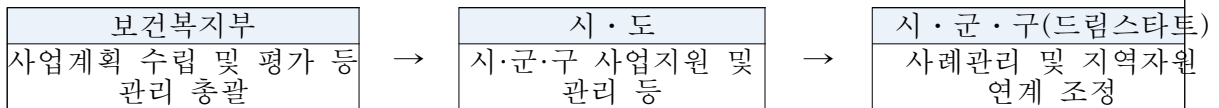
【참고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12.8.5. 시행)

☐ **(사업대상)** 0~만12세 취약계층 아동(수급자, 차상위) 및 가족, 임산부
* (사례관리 아동 수) ('20년) 72,818명, ('21년) 66,310명, ('22년) 집계중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아동권리보장원(지원), 시군구(수행)



○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장·전담공무원 기본 3명, 민간전문인력 기본 4명)

☐ **(사업예산)** '23년 **54,109백만원**

○ **운영비, 서비스 지원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 공무원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공간 확보 비용은 지자체 부담

☐ **(지원체계)**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아동발달 사정**에 따라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기 점검·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 실시**

☐ **(서비스)** 아동의 **균형적 발달**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구분	필수·맞춤서비스 예시
신체/건강	건강검진, 예방접종,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치과치료, 안과검진, 영양교육, 한방치료, 성장판검사, 체육활동 지원, 방역서비스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독서지도, 도서대여, 방문미술지도, 인지장애 및 언어치료 서비스 등
정서/행동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체험활동, 특기적성지도, 진로지도,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부모/가족 지원	부모교육, 임산부 산전·산후검진, 양육상담 등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 **(배경)**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예산)** 53,703백만원 ('23년)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청소년 발달장애인 10,000명 대상

□ **주요내용**

- **(지원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 **(제공시간)** 기본 월 66시간(월-토, 09~21시)
- **(제공서비스)**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용자 욕구·선택에 의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바우처 제공
- **(서비스 단가)** '23년 기준단가 15,570원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비율	100%	90%	80%
시간당 단가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 **(제공기관 인력)** 시군구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지정,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 보유 및 주간활동 교육 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활용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 ①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②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③성인권 교육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보호자, 가족
 -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사업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징	운영 주체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참여 (필요시)	·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수행 기관 지역 센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참여 (필요시)	· 현장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 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성인권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분야 종사자 등	선택	·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 연구형 교육제공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부모교육지원사업	675	745	902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중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법」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부모상담지원사업	730	730	1,286

* 자료: 보건복지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융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단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도로명주소법」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 목적

- 은퇴한 노인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학교 주변 등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용,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운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추진 경과

- ('08년) 서울·인천·경기 11개 지역 아동안전지킴이 시범운영(110명)
- ('09년) 4개 기관 협약 체결 및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정식 시행(1,010명)
※ 복지부(예산 편성), 경찰청(선발·배치), 경우회·노인회(인력풀 구성)
- ('13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복지부 → 경찰청 이관
- ('14년) 6,470명 배치(240억) 및 근무여건 개선*
* △ 활동비 '정부고시 최저임금수준' 인상, △ 활동시간 4H→3H 단축
- ('22년) 경찰서 258개서 12,010명 배치(645억)
- ('23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방이양(국고보조→자치경상보조) 및 경찰서 258개서 11,092명 배치(626억)

□ ' 23년 시도별 운영 현황

(단위 :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92	1,214	250	340	514	239	233	193	95	1,811	744	650	511	686	745	818	910	989	150